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오산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과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4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명 :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482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4월 8일

발의의원 : 김영희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오산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과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47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으로서 오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공표하는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오산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및 사업
2.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3. 장기요양 관련 종합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법률·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